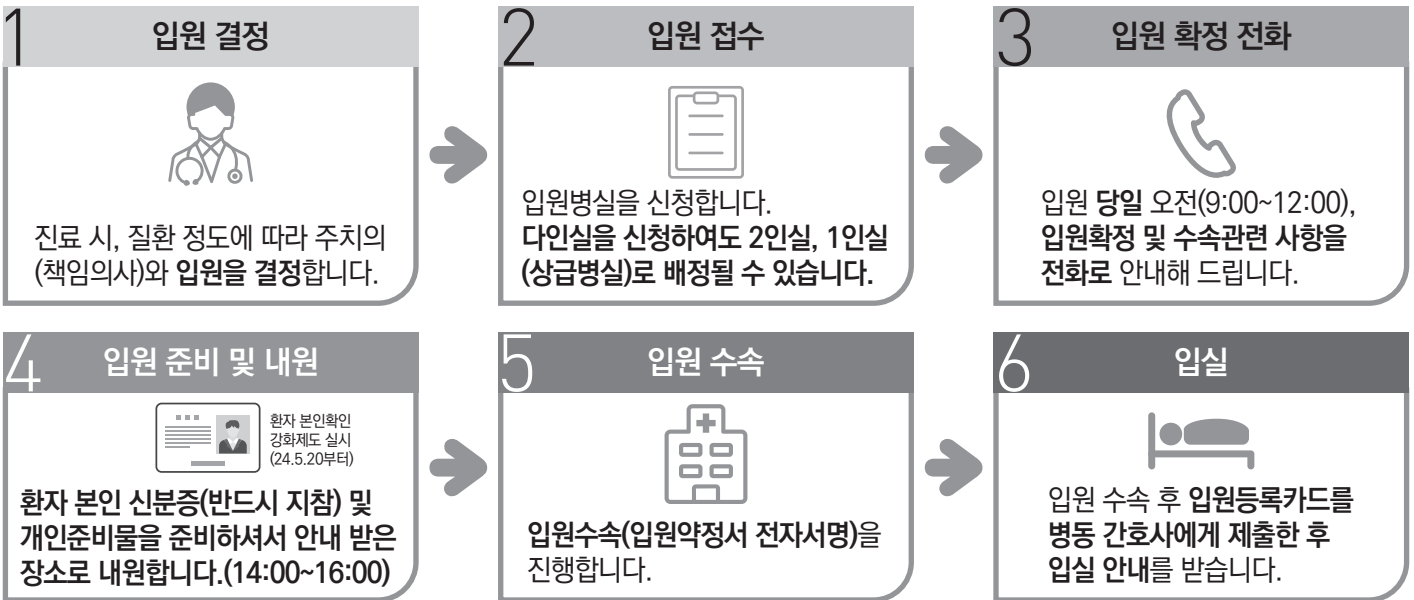




입원 예정이신가요?

● 입원 절차 안내



반드시 입원 확정 전화를 받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확정 전화를 받으셨나요?

필수 지참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환자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4.5.20부터)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시 필수(의료법 제17조)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및 보호자 신분증 필요
	개인 준비물	기본 필요 물품 복용중인 약 / 처방전
필요 시	헌혈증 장애인카드(복지카드)	입원중 수혈 받는 경우(수혈비용 차감) 의료급여 2종, 차상위 2종일 때(일부 장애기금 지원)

메니큐어, 액세서리 제거 : 입원 전 손발톱의 메니큐어, 젤네일은 지우시고, 액세서리는 분실위험으로 제거

※ 무료주차 : 입원/수술/퇴원 해당일 1일, 환자 1인당 1대, 1회만 가능(주차관련 문의 T. 02-2258-6000)

● 병동 출입 및 면회 / 방문안 제한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해 별도 공지 시 까지) 입원환자의 감염예방 및 안전한 진료를 위해 병동 출입을 제한하며, 면회 및 방문안을 전면 제한합니다. 보호자는 1인만 원내 상주 가능하며(*병동별 일부 상이), 의료진 면담 필요 시 별도 연락 드립니다.

(※ 별도 공지 이후 적용) 환자안정을 위해 병문안 시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문안 가능시간	· 평일 1회 18:00 ~ 20:00 · 주말 및 공휴일 2회 10:00 ~ 12:00 / 18:00 ~ 20:00
병문안 제한대상	· 환자 및 내원객 등에게 감염성 질환 전파 우려가 있는 분 - 급성 감염 증상(기침, 발열, 설사, 구토, 발진, 결막염 등)이 있는 분 - 최근 1개월 이내 감염성 질환으로 치료중인 분 · 만 12세 이하의 아동,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면역기능 떨어진 분 · 3인 이상의 단체 등
병동 반입금지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음식물, 전열기구 등

(※ 별도 공지 이후 적용) 환자안정을 위해 병문안 시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병문안 가능 시간

구분	소아	내과	신경계	혈액계	외과	신생아	심장계
오전	11:00 ~ 12:00	11:00 ~ 11:20	11:20 ~ 11:40	11:30 ~ 11:50	11:00 ~ 12:00	12:00 ~ 12:20	
오후		19:00 ~ 19:20		19:30 ~ 19:50	-	18:00 ~ 18:20	

● 병실 변경 신청

1. 병실배정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예방, 완화, 치료, 재활 등)의 긴급성과 입원대기일자 등을 고려하여 배정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입원 당일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배정이 어려운 경우 2인실, 1인실(상급병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2. 입원당일 희망하는 병실로 배정받지 못한 분은 입실 후 병동 간호사에게 희망 병실을 신청하시면 순서에 의해 병실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병실료 안내

[건강보험기준 2024.02.01 현재 / 단위 : 원]

병 실	상급병실			일반병실	
	VIP 1인실	1인실	2인실	4인실	5인실
환자 부담금	620,000원	465,000원	120,890원	45,333원	24,556원

※ 병실료는 보험자격, 나이(소아가산 등), 질환 및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원 수속시 “전자서명” 할 입원약정서 내용입니다.

1. 본인(보호자)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병원의 규정과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간호사,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이며, 질병이 호전되어 담당의사의 퇴원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2. 본인(보호자)은 입원기간 중 의료진 및 병원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병원규칙을 위반하는 말과 행동을 했을 시 진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합니다.
3. 환자가 병원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외출·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4. 진료비는 병원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환자가(약정인이)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지급명령, 가압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5.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의없이 변상하겠습니다.
6. 입원기간 중 환자, 보호자, 방문객 등이 소지 중인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은 병원이 지정한 보관장소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분실, 훼손, 도난되었을 때에는 병원에 그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7. 진료 및 수술(시술)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인 문제에 대하여 병원측의 진료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행정조치 포함)을 묻지 않음은 물론, 만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병원은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이므로 병원 단지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본인(약정인)은 상기 약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함을 약정합니다. 또한 상기 약정을 어길 경우에는 퇴원 등 병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생활과 기밀성 보장

1. 서울성모병원은 환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지침에 의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1층 입퇴원수속 창구, 병동 게시판, 병원 홈페이지 게시)
2. 입원 진료 중 개인의 정보공개(의무기록 포함)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 협조

1. 서울성모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모든 급성기 환자들에게 적절한 입원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환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외래 진료로 진행하오니 의료진의 전원/퇴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